

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된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며, 2021. 12. 24.일까지 예금을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 지급기한 전에 통장과 인감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국고귀속 예정 안내문 반송 안내 -

- 우편물 반송 대상자 : 붙임 참조(소액이체 안내문 2,609명, 지급 안내문 6,529명)
- 국고귀속 예금 예금 수령 방법
 - 본인 수령시 : 통장, 인감 또는 서명, 실명확인증표(ex: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- 대리인 수령시 : 통장, 인감, 위임장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- ※ 통장이 없으신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.
그리고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합니다.
- ※ 구비서류 :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
- 지급우체국 : 전국 우체국
- 지급기한 : 2021. 12. 24일까지